

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

인터넷 구매대행, 꼭 확인하고 수입신고하세요!

- 수입신고, 금지성분, 부당한 광고 등 확인 요령 안내 -

① 해외직구 식품의 수입신고

- 해외식품등을 구매 대행할 때에는 해외식품이 반입되는 보세창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
- (수입신고) 유니패스(<https://unipass.customs.go.kr>)→통관단일창구→‘인터넷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’ 작성→수입신고

② 구매대행 금지성분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

- 수입이 금지되었거나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등에 고시되지 않은 원료·성분이 사용된 식품

〈 수입금지 성분 확인 방법 〉

- ① 수입식품정보마루(imfood.mfds.go.kr) > 안전정보 > 수입검사 관련정보 > **인터넷구매대행 참고사항**
- ② 식품안전나라(foodsafetykorea.go.kr) > 식품안전 > 수입식품 > 수입신고 및 검사 > **구매대행 참고사항**

〈 식품/ 건강기능식품/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확인 방법 〉

- ① 식품안전나라(foodsafetykorea.go.kr) > 전문정보 > 기준·규격 정보> **공전**
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게시된 제품

〈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확인 방법 〉

- ① 식품안전나라(foodsafetykorea.go.kr)에서 ‘**해외직구식품 올(ALL)바로**’ 바로가기
- ② 식품안전나라 > 위해예방 > 해외직구정보 > ‘**해외직구식품 올(ALL)바로**’ > 제품정보 >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> **제품명(영문)** 또는 **성분명(영문)으로** 검색

○ 사람의 질병에 대한 진단, 치료, 완화, 요법, 예방을 위한 의약품 성분

〈 국내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 〉

- ① 의약품안전나라(nedrug.mfds.go.kr) > 의약품등 제품정보 > 성분명 입력 후 검색
- ② 약학정보원(www.health.kr) > 의약품검색 > 성분명 입력 후 검색

○ 유통기한 경과 제품

④ 부당한 표시 · 광고

○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시 · 광고

* 해외직구식품은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

○ 질병의 예방 ·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

○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

〈 식품 부당광고 사례 참고 자료 〉

- ①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> 법령·자료 > 공무원지침서 / 민원인안내서 > **식의약제품
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집**
- ② (영상) 사업자가 헛갈리는 식품 표시 광고! : <https://youtu.be/t8THHClYBEQ>

※ 해외직구식품 구매대행 관련 법규 안내

○ 「식품위생법」제4조(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)

○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20조(수입신고 등)

○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25조의2(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)

○ 「식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법률」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)